

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2. 1.17.	의회훈령 제 3호
일부개정	1999. 1.16.	의회훈령 제15호
일부개정	2005. 6.10.	의회훈령 제27호
일부개정	2009. 6.26.	의회훈령 제53호
전문개정	2010. 9. 3.	의회훈령 제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에 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심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 관련사항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2. 학술연구기관 또는 언론계출신 유경험자
3.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편집과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의원인 위원에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2.1.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